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

#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고기판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2. 28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金基永

#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計 報 告 書

#### 1. 경 과

의안 제184호로 2013년 2월 18일 고기판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영등포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사용료 감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되, 일반 이용자의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체별 이용횟수를 년 1회로 제한함(안 별표 4(제8조제3항 관련))

- 나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대림운동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별표 3(제8조제2항 관련))
- 다.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항
 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의2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중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8조제2항 별표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에서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정하였고,
- 안 제8조제2항 별표3 대림운동장 사용료에서 생활체육회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별표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에서 생활체 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21세기 여가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,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주요 시설
영등포구민체육센터	신길동 426-3 (신길근런공원 내)	지하 2층/지상 3층 연면적 9,131	수영장, 골프연습장, 체육관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유아체육시설, 다목적체육실, 문화강좌실
대림운동장 체육시설	대림3동 780	16,498m²	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
양평동 체련장	양평동5가 128-1	1,628m²	농 구 장 2면
대방천 체련장	신길3동 376	$4,243\mathrm{m}^2$	게이트볼장 1면
당산2동 배드민턴장	당산동6가 91-34	564m²	배트민턴장 4면
양평2동 배드민턴장	양평동5가 128	240 m²	배드민턴장 3면
도림동 배드민턴장	도림동 265	320 m²	배드민턴장 3면
안양천 체육시설	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(문래동)	30,508m²	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족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
	오목교~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(양평1동)	5,300m²	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족 구 장 2면
	양평교~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(양평2동)	17,448m²	족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
도림천 체육시설	둔치체육시설(도림동)	540 m²	농 구 장 1면
유수지 체육시설	도림동 유수지	12,105m²	조 강 트 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대림3동 유수지	11,450m²	조 강 트 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신길 유수지	2,670m²	조 깅 트 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

### 1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등 체육시설을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 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2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

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- 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  - 가. 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 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
- 다. <u>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</u>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- 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- 5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